

5급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경채 도입키로

1. 개요

1.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에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3.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 (1)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각 40문항 출제
 - (2)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4.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전망이다.

- (1)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2) 공직가치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높일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1)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폴·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 검정시험 기준점수(7급공채, 2017년부터 시행)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2)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을 연장한다.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현행 각각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 (3)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 이밖에 신설된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1)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 규정되었다.

(2) 정보보호 직류 직급별 시험과목 및 구체적 출제범위

계급	시험과목	직렬	전 산				
			직류	전산개발 (현행과 동일)	전산기기 (현행과 동일)	정보관리 (현행과 동일)	정보보호(신설)
5급 이상	공채	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2017년~),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선택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운영체제론,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중 1과목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경채·전직·승진	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총론
		2차	필수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네트워크 보안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공승	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자료구조론, 행정법, 영어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영어	
	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6급 및 7급	공채 공채	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경채·전직·승진	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구조론	자료구조론	네트워크 보안
		2차	필수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정보보호 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보호 기술 중 1과목			

II.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5급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시행 :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5급 공채시험 등에 '헌법' 미포함(07년~) · (개정) 5급 공채시험 등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점 이상인 경우 Pass제로 운영
②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 (시행 : 공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명시적 법령근거 부재 · (개정)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③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등 (시행 : 공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6급이하 경채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선발 · (개정)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절차 : 필기시험(PSAT) → 서류전형 → 면접시험
④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 검정시험 도입(시행 :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7급 공채시험 '영어' 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 · (개정)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⑤ 영어·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p><유효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영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 (개정) 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 3년, 한국사 4년)
⑤ 영어·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p><제출기준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 · (개정)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확대
⑥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개편(시행 :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0.5%,1%) 부여 · (개정)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일괄 폐지
⑦ 기타 제도개선	<p><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 신설(角, 6) · (개정)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
	<p><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자격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서류 제출